

의안번호	2202672
의 퇴 인	박용갑 의원
회 답 일	2024. 8. 13.
추 계 번호	24A2603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전기판매사업자의 폭염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비용을 보전할 경우(지원을 50% 가정)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2,372억원, 2029년에 2,552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조 2,334억원(연평균 2,467억원)으로 추계됨
- 본 추계 결과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감면 비율과 정부의 지원율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따른 것이며,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와 다를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평균
전기요금의 감면 (안 제17조의3)	2,372	2,429	2,470	2,512	2,552	12,334	2,467

주: 본 추계 결과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감면 비율과 정부의 지원율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따른 것이며,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와 다를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의3 (전기요금의 감면)	정부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7조의3(전기요금의 감면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폭염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 해당 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데, 폭염일수가 많은 8월의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추계함
 - 기상청의 폭염일수¹⁾ 자료에 따르면, 월별 폭염일수는 과거 10년(2014~2023년) 동안 평균적으로 7월은 7.1일, 8월은 7.7일 수준임
-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재난 발생 해당 월의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(안 제17조의3제2항), 감면 비율은 30%로 가정함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실제 감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²⁾
-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(안 제17조의3제3항), 지원 비율은 50%로 가정함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실제 지원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

1)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℃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하며, 관련 통계는 기상청의 「기상자료개방포털」에 따름(〈2024.8.9. 검색〉).

2) 전기요금 감면으로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(2.7%) 등의 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, 이러한 간접적인 효과는 본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전기판매사업자의 폭염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정부의 보전금액”으로 하며, 향후 주택용 전력판매수입(매년 8월)을 추정한 후 감면 비율(30%)과 지원 비율(50%)을 곱하여 추계함
 - 한국전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,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은 2023년 8월 기준 1조 5,094억원 수준임(판매단가는 160.97원/kWh)³⁾
 - 향후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과 판매단가 등에 따라 유동적인데, 본 추계에서는 2023년 8월 기준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에 산업통상자원부의 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(2022~2036)」(2023.1.13.)의 전력소비량 증가율(기준수요)을 적용하여 추정함

[표 2]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력판매수입(매년 8월) 추정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.8.	2026.8.	2027.8.	2028.8.	2029.8.
주택용 전력판매수입 추정	15,812	16,191	16,466	16,746	17,014
전력소비량 증가율(%)	2.2	2.4	1.7	1.7	1.6

주: 전력소비량 증가율(%)은 산업통상자원부의 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(2022~2036)」(2023.1.13.)의 기준수요(전국, 전력계통) 기준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개정안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매년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%를 감면하고, 이에 대해 정부가 50%를 보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2,372억원, 2029년에 2,552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조 2,334억원으로 추계됨
 - 본 추계 결과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감면 비율과 정부의 지원율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따른 것이며,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와 다를 수 있음

3) 한국전력공사의 『한국전력통계(2023년, 제93호)』(2024.5.)에 따르면, 전력판매수입은 전력판매에 따라 청구된 전기요금(수금액과 별개)으로,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합한 금액임(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과 부가가치세 등 불포함). 개정안의 전기요금 감면은 사용량요금을 대상으로 하는데, 전력판매수입 중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구분하기 어려워 본 추계는 전력판매수입을 기준으로 함.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전기요금의 감면 (안 제17조의3)	2,372	2,429	2,470	2,512	2,552	12,33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감면 비율과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따른 것이며,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이와 다를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